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251호

2024년도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재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 및 단체들에게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과 성원을 바랍니다.

2024. 7. 31.

서울특별시

1. 시상분야 : 10개 분야

가.	문	학	바.	연	극
나.	미	술	사.	문화산업 (※ 대중예술 포함)	
다.	국	악	아.	문화재	
라.	서양음악		자.	독서문화	
마.	무용		차.	문화예술후원	

※ 분야별 세부분야 [참고1] 참조, 대중예술 분야는 문화산업에 통합 운영

2. 시상인원 : 분야별 1명 + (가)~(사) 분야의 경우 신진예술인 1명 포함 최대 2명 (총 최대 14명 시상)

- 분야별 1명 시상하되, 접수 인원에 따라 (가)~(사) 7개 분야 중 최대 4개 분야에서 신진예술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최대 2명에게 시상
- 분야별 2명 시상 시, 예술 거장과 미래가 촉망되는 신진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심사 및 시상

3. 시상내용 : 상패(서울특별시장상)

4. 수상후보 추천권자 : 해당 분야별 관계기관 · 단체 또는 개인

- 관계기관 및 단체 : 해당 기관·단체 대표 명의 추천
- 일반시민(개인) : 만 19세 이상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30명 이상일 경우 후보자로 등록
- ※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30명 미만일 경우 후보자로 미인정
- ※ 추천받은 후보에게 신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낙한 경우만 심사 진행하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본인 동의서 사전 제출(필수)

5. 수상자격

- 해당 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참고2 참조)
-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은 제외

6. 제출서류

- 가. 추천서(붙임1) 1부
- 나.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7. 제출방법

- 온라인 : 이메일 또는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 ▶ 이메일 : munhwasang@seoul.go.kr
 - ▶ 문화포털(<https://culture.seoul.go.kr>) ⇒ QR코드 접속 후 '문화상추천'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정책과(04520)

8. 제출기간 : 2024. 7. 31.(수) ~ 8. 16.(금) 16:00까지

※ 모든 접수(방문, 우편, 온라인접수)는 '24. 8. 16.자 16:00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

9. 심사방법(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 1차 심사(서류 심사) : 분야별 공적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 2차 심사(대면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대면 심사(최대 14명)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에 대해 시민 온라인 투표 진행

- 2차 심사 결과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자 결정

10. 시상 : 2024. 10월 말(예정)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시상은 2024년 10월 말에 예정이며, 시상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24 서울특별시 문화상 세부 시상분야

□ 시상분야 : 10개 분야

가. 문 학 분 야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과 그에 관한 번역 등 문학 분야

나. 미 술 분 야

- 회화, 판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 등 미술 분야

다. 국 악 분 야

- 연주, 창작, 평론 등 국악 분야

라. 서 양 음 악 분 야

- 연주, 창작, 평론 등 서양음악 분야

마.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용 분야

바. 연 극 분 야

- 연극, 뮤지컬 등

사. 문 화 산 업 분 야(대중예술 포함)

- 언론(신문, 잡지,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영상(영화, 뉴미디어)등 문화산업분야 및 대중음악, 연예 등 대중예술 분야

아. 문 화 재 분 야

- 문화재 발굴, 보존, 연구, 전통문화, 공예 등 문화재 분야

자. 독 서 문 화 분 야

- 독서문화 진흥(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단체, 시민 등) 및 기타 공헌(연구, 기반 조성, 독서활성화 공헌 등) 분야

차. 문 화 예 술 후 원 분 야

- 문화예술인 외에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개인 또는 기업.

※ 접수 인원에 따라 (가)~(사) 분야 중 최대 4개 분야에서 2명까지 선정(최대 14명 수상)

서울특별시 문화상 추천 제한 대상

※ 해당 제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 :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로,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 제한
 -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4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8.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세부 공적 내용

- ※ 주요공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작성(2쪽 이내)
- 객관적 사실위주로 주요 활동내역 작성 : 기간, 장소, 실적 등
-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작성 시 폰트 및 글자크기 수정 금지
- 표 나누기 금지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기록

< 학 력 >

년 월 일	학 력 (학 위)

< 경 력 > ※ 최근 순으로 기재 (주요 경력 위주 5개 내외)

년 월 일	경 력 (직 위)

< 수상경력 > ※ 최근 순으로 기재 (주요 수상 위주로 5개 내외 기재)

년 월 일	내 용

※ 단체는 학력란에 “연혁”을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 개인추천인 경우 작성

《공동추천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

※ 공동추천자 명단 없는 경우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30명 이상일 경우만 후보자로 인정

※ 본인 동의서

서울특별시 문화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등)	주소	서울시 거주기간 (2024.6.17.까지)	개인 휴대전화

위 본인(단체)은 2024년 서울특별시 시민상(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의 수상을 위한 거주 요건에 해당됨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거주 요건 :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일(2024. 6. 17.)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의 제한 사유(이종시상의 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결정의 취소 및 수상 철회 등 수상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한 사유 :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3.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제한 사유(불임 참고) 및 신고의무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결정의 취소 및 수상 철회 등 수상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 및 기록 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수상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 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인터넷 게시물 게재 ※공개정보: 성명, 소속, 사진, 공적 내용, 수상일자
- ㉢ 상패 수여 및 시민상수여확인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수상 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수상 추천서 5년

3. 개인정보의 수집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장, 직장주소, 거주기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공적사실, 인물(단체)사진

2024.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